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9. 25.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접수일자 : 2008년 9월 1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9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9. 23)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김정진)

가. 제안이유

- 우리구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 신고기한 · 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 지급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
- 보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부조리 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 및 부조리 신고서를 규정(안 별표 및 별지서식)
-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안 부칙)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이미 서울시와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양천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59 호
----------	---------

제출연월일 : 2008.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
에 손실을 끼친 행위
-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나. 신고기한·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지급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보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부조리 신고서 및 부조리 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및 별지 서식)

- 1)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 200만원 이내
- 2)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근거가 된 경우 : 100만원 이내
- 3) 그 밖에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20만원 이내

바.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7. 5.29 조례 제4515호)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08. 8. 1 ~ 8 . 20 (20일간)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구와 소속 행정기관,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구분 번호	지급기준			보상금
	일반사항	금품.향응 수수 신고 금액	추징,환수액	
1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200만원 이내
2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00만원 이내
3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20만원 이내

비고 : 지급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별지 서식]

부 조 리 신 고 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 락 처	
	근 무 처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비 고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p>				
신 고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210mm × 297mm